

서울특별시 강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
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9. 2. 27

행정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 및 제출자 : 2019. 2. 11.(월), 방민수 의원 등 9명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19. 2. 18.(월) (의안번호 제87호)

다. 위원회 상정일자 : 2019. 2. 25.(월), 제260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

2. 제안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방민수 의원

나. 제안이유

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기질식 방지를 위한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구민들의 안전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1) 방연마스크의 비치에 관한 규정(안 제59조)

라. 참고사항

- (1) 관계법령 :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,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- (2)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있음
- (3) 합 의 : 자치안전과와 합의되었음
- (4) 입법예고(2019. 2. 12. ~ 2. 16.) 결과 : 의견없음

3. 검토의견

① 조례 제정의 취지

- 화재발생시 골든타임은 화재의 초동진압과 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한 시간으로 화재 또는 환자 발생 후 최초 5분이며, 발생 후 5분 경과 시 연소 확산 속도가 급격히 증가함
-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하여 화재 골든타임을 지키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방민수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8명 의원이 공동 발의하여 제출된 안건임.

② 강동구 화재발생 및 인명피해 현황

- 작년(2018년) 한 해 동안 강동구 화재발생에 따른 인명피해 현황을 보면 전체 화재 324건에 19명의 사상자(사망 4명, 부상 15명)가 발생했으며,

19명의 사상자 중에서 연기,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사상자는 57.9%에 달하는 11명(사망 3명, 부상 8명)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.

- 지난 1월 21일 강일동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1명이 사망하고 17명이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사고가 발생함

※ 사상원인별 인명피해 현황

구 분	합계		사망		부상	
	명	비율(%)	명	비율(%)	명	비율(%)
합 계	19	100	4	100	15	100
연기,유독가스흡입	8	42.11	2	50	6	40
연기,유독가스흡입및화상	3	15.79	1	25	2	13.33
화상	5	26.32	0	0	5	33.33
넘어지거나미끄러짐	0	0	0	0	0	0
건물붕괴	0	0	0	0	0	0
피난중뛰어내림	0	0	0	0	0	0
갈힘	0	0	0	0	0	0
열상	2	10.53	0	0	2	13.33
복합원인	0	0	0	0	0	0
미상	0	0	0	0	0	0
기타	1	5.26	1	25	0	0

<자료출처 : 소방청 국가화재 정보센터 화재 통계>

③ 적용대상

- 본 조례가 적용되는 강동구 내 시설로는 동청사 및 자치회관 23개소, 국공립어린이집 62개소, 구립어르신사랑방 43개소, 구립지역아동센터 21개소 등 총 222개소임

- 이곳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수를 감안하면 일시에 모든 시설에 소요량을 비치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화재에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 후,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

④ 검토의견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‘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,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,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·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’ 라고 규정하고 있어, 상위법에 저촉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- 소화설비가 설치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화재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방연마스크의 비치는 피난설비의 보완적인 역할이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
- 다만, 시판되고 있는 방연마스크는 유럽이나 국제표준기구에서 인증을 받은 제품이고, 국내 인증된 제품은 없음. 향후 국내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이에 대한 법규정비가 필요할 것임
- 또한,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불 때 소방용품 의무비치, 인증제도 시행 촉구 등 권한 있는 중앙정부로의 지속적인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해당 없음

5. 수정안 요지

- 해당 없음

6. 심사결과

- 원안 가결

7. 소수의견의 요지

-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

- 없음